투자설명서 변경 내용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제갈공명증권투자신탁[주식]

□ 변경 사유

- 1. 운용전문인력 변경 (정인기, 안홍익 → 안홍익, 조상현)
- 2. 자본시장법 및 세법 개정사항 반영
- 3. 제4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
- 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년 5월 27일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투자결정시 유의사항안내	〈신설〉	9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
		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
		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 분산투자
		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
		<u>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,</u>
		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
		<u>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</u>
		<u>융투자협회, 판매회사, 자산운용사</u>
		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전문인력	<u>정인기</u> , 안홍익	안홍익, <u>조상현</u>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	최근 기준으로 기재	<u>2015.04.30</u>
5. 운용전문인력	정인기:2012.8.24 ~ <u>현재</u>	정인기: 2012. 8.24 ~2015. 5. 26
나. 책임운용전문인력 최		<u>안홍익 2015. 5. 27~현재</u>
근 변경 내역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	11)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	11)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:
상	법 시행령 제268조 <u>제3항</u> 의 규정에	법 시행령 제268조 <u>제4항</u> 의 규정에
가. 투자대상	의한 거래	의한 거래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		
한 사항	제4기 재무제표	2015 5 1 71ス
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	확정에 따른 갱신	<u>2015. 5. 1. 기준</u>
되는 보수 및 비용		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	개인 15.4%(<u>주민세</u> 포함), 일반법	<u>15.4%(지방소득세 포함)</u>
관한 사항	인 14%	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



나. 과세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 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**지방소득세**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 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기 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득)이 기 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 금융소득합계액(이자소득과 배당소 득)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득)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 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 른 종합소득(부동산임대소득, 과세소 른 종합소득(부동산임대소득, 과세소 득, 기타소득)과 합산하여 개인소득 득, 기타소득)과 합산하여 개인소득 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. 세율(최고한도 세율 35%, 주민세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 3.5%)로 종합과세 됩니다. 익은 15.4%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 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 익은 14%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)됩니다. 이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 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 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 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 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 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 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 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 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 받게 됩니다. 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 게 됩니다.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. 재무정보 제4기 재무제표 <u>2015. 5. 1. 기준</u> 확정에 따른 갱신 제4기 재무제표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 2015. 5. 1. 기준 현황 확정에 따른 갱신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 제4기 재무제표 <u>2015. 5. 1. 기준</u> 적 확정에 따른 갱신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(5)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 관한 사항 우. 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가. 의무해지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.



2.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나. 임의해지	(2) 집합투자업자는(1)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 내에 해지, 합병 및 모자형전환, 존 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 해야 합니다.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. 정기보고서 (1)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 류 제출 등	③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 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 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 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이하인 경우 -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 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 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

